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22. 장정희 의원 외 7명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24.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3. 3. 3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장정희 의원

가. 제안이유

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 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하여,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,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2)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3)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(장흥용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하여,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,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1조의 제목 “(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)”를 “(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심의·자문하기”로, “추진위원회”를 “조성위원회”로 하며,
 - 같은 조 제1호를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며,
 - 또한 안 제1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“노인분야 전문가”를 신설하고,
 - 안 제13조에 공무원인 위원 임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 임.
-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%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었으며, 2018년에 14%를 넘는 고령사회, 그리고 2026년에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우리구도 2023년 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5,975명으로 전체 인구 (365,447명) 중 약 15%를 차지하고 있음.
- 이에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 등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·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, 우리 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할 확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- 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 ①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

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 삭제 <2008. 2. 29.>

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타구 위원회 명칭 현황

명칭	조성위원회	추진위원회
구	6개구	3개구